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개정('25.8.7 시행)에 따라,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서 환경부 고시로 변경 및 인용 별표 현행화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환경부고시로 변경

나.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별표 현행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학물질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 고시안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「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1. 지정내역

구분	지정번호	교육기관 명칭	소재지	대표자	지정기간
교육 기관	제2018-001호	(사)한국화학 안전협회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, 326~331, 344~349호	지의상	'25.1.1 ~ '26.12.31
	제2018-002호	(사)한국환경 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, 5층 502호	권기태	
	제2018-003호	산학협력단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	서원교	
	제2018-004호	(사)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	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(신월동, KCMA 빌딩)	김규범	
	제2025-001호	한국환경보전원	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-2	신진수	
특화 교육 기관	제2024-001호	(사)한국반도체 산업협회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	곽노정	'24.1.1 ~ '25.12.31

2. 교육분야

구분	교육내용
교육기관	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6의4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화 교육기관</p>	<p>「화학물질관리법」시행규칙 별표6의4의 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 해당 산업 특성과 관련한 특화교육</p>
--	---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